

대학부설연구소 운영 및 평가 지침 신규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3 조(연구소의 설립기준) ① (생략) ② 연구소의 설립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신청서류 제출: 설립계획서 1부(별지서식 1) 2. 심의 및 승인 가. 자체승인연구소: 연구산학위원회의 심의(설립요건 및 신청 내용 심사)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 나. 법인승인연구소: 연구산학위원회 심의(설립요건 및 신청 내용 심사)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 (신설)</p>	<p>제3조(설립) ① (현행과 동일) ② 법인승인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추가로 다음 설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한다. 1. 법인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 2.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체 행정부서 및 정규직 직원 존치 필요성 3. 독립된 건물 보유 가능성 4. 기타 법인 이사장이 판단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③ 연구소의 설립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신청서류 제출: 설립계획서 1부(별지서식 1) 2. 심의 및 승인 가. 자체승인연구소: 연구산학위원회의 심의(설립요건 및 신청 내용 심사)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 나. 법인승인연구소: 연구산학위원회 심의(설립요건 및 신청 내용 심사)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</p>	<p>* 2항 내용 변경 (법인승인연구소 설립조건 추가) * 기존 2항는 3항으로 이동</p>